

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수립(안)은 2005년 5월 24일 발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지정·고시에 따라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후 결정에 앞서 『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』 제17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 표 연 도 : 2030년

나. 공간적 범위 : 3,598km²(2006. 1.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지정·고시)

구 분	계	충청남도	대전광역시	충청북도
면적(km ²)	3,598	1,602	540	1,456
권역		연기군, 공주·계룡시 전역, 천안시 일부(동병천, 수신, 성남, 광덕면)	전역	청주시, 청원·진천·증평군 전역

다. 계 획 인 구 : 370 ~ 400만명

라. 내용적 범위

- 목표·전략, 공간구조 등 기본구상
- 토지이용, 광역교통, 녹지관리, 광역시설 등 부문별 계획
-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기본계획에 준하는 사항(기본방향 제시)
-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행 및 관리방안

3. 추진 경위

- 2005. 7 :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(건설교통부)
 - 용역사 : 국토연구원, 2005. 7. 8 ~ 2006. 12. 31
- 2005. 9 :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
 - 1~3차 협의회 개최하여 광역계획권 검토
- 2005. 12 : 광역계획권 지정안 심의(추진위원회)
- 2005. 12 : 광역계획권 지정·고시
 - 건설교통부, 2006. 1. 2
- 2006. 2 ~ 5 : 기본구상안 작성
 - 관계기관 실무 협의회, 4~6차 협의회 개최를 통한 검토
- 2006. 6 : 협의회 민간위원 간담회
(인구지표, 지역별 기능분담안 검토)
- 2006. 8 : 부문별 계획 초안 작성(7차 협의회에서 검토)
- 2006. 12 : 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 및 수정, 보완(8, 9차 협의회)
- 2006. 12. 19 ~ 21 : 공청회 개최(충남, 대전, 충북)
- ※ 2007. 1. 9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·도 의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

4. 근거법령

-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(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(지방자치단체의의견청취)

5.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(안) : 별첨

6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7. 기타(향후계획)

- 2007. 1~2 :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협의
- 2007. 3 :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 심의 및 고시(건교부)

관 련 법 령 발 취

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

제17조(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)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·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 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립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·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15조 (지방자치단체의의견청취) ①시·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·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·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, 관계 시·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해 시·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